

『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 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구민의 교육 욕구 수용 및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 되었으며,

○ 주요내용은

- 교육발전 협의회를 40명 이내의 교육에 식견있는 인사로 구성하여,
-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,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 하고 사업추진 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.

○ **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**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본바,

입법형식에 부합되고,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**개별조문을 검토한바,**

안 제8조(고문)중 “약간 명” 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인원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, 안제12조에서 “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” 의 보상규정을 두었는바, 본 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갖지 않는 임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,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“활동 및 운영에 따른” 경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**타 자치단체의 입법례로는**

서울시 강동구, 서울시 관악구, 경기도 김포시, 제주도 서귀포시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 붙임 : 1. 관련법규.
2. 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표.

2006. 2. 20

보고자 : 김 찬 재

관 련 법 규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1995.12.29, 1999.2.8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
설치·운영·지도

제15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
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표

구	영등포구	강동구	관악구	김포시	서귀포시
기구	협의회와 운영위원회	총회 분과위원회(5)	협의회 분과위원회 (제한없음)	없음	총회 실무위원회 (10인 이내)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장: 1인 ▪ 부의장: 1인 ▪ 위원: 40인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장: 1인 ▪ 부의장: 5인 ▪ 감사: 2인 ▪ 총무: 1인 ▪ 위원: 100인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장: 1인 ▪ 부의장: 1인 ▪ 위원: 65인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원장: 1인 ▪ 부위원장: 1인 ▪ 위원 20~30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원장: 1인 ▪ 부위원장: 1인 ▪ 위원: 40인 이내
임기	2년 연임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장: 2년 (1회연임) ▪ 부의장.감사. 총무: 2년 (연임가능) 	2년 연임가능	2년 연임가능	2년 연임가능
회의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협의회 - 연2회 원칙 ▪ 운영위원회 - 분기회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기회: 연1회 ▪ 임시회 - 회장 요구시 - 회원 1/3 이상 요구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협의회 - 반기1회 원칙 ▪ 분과위원회 - 필요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기회 - 분기 1회 ▪ 임시회 - 필요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협의회 - 반기1회 원칙 ▪ 실무위원회 - 안건 상정시
고문	약간명	없음	없음	없음	약간명
간사	업무담당과장	없음	기획예산과장	업무담당과장	3인 (시청.교육청. 교사 1인씩)
예산지원	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 경비	운영에 따른 경비	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 필요경비	일비 및 여비	연구활동 및 지원사업 추진경비